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 운영사업의 명문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조성의 재원확보 방법을 정함 (안 제4조)
- 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을 정함 (안 제5조)
- 라. 재단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구성과 의결기준을 정함(안 제7조)
- 마. 재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의 예산 승인과 결산의 시기를 정함 (안 제11조)
- 바. 재단이 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도, 군의 사업범위를 정함 (안 제13조)
- 사.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군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를 명문화함 (안 제15조)
- 아.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3 . 6. ~ 3 .27)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활동 보급 사업
2.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문화계승 발굴·육성 사업
3.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사업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군에서 위탁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 된다.
-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되어 이

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16조(재정지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연락처	(033) 330 -2250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 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